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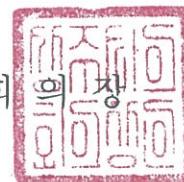


##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-2호

「상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4일

상주시의회



### 「상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가.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
- 나.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,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 하며, 협의와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  - 17세 이하 (상주시 주민등록 또는 시 소재 학교 재학)
- 나. 기능 및 구성 (안 제3조)
  -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, 토론 및 참여활동
  - 20명 이내, 공개모집 또는 학교장 추천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8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pj5725@korea.kr
- 2) 주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### □ 자치법규명 : 상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